

군포시 고시 제2026-72호

군포도시관리계획(군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경기도 고시 제1994-246(1994.8.31.)호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09-5(2009.03.11.)호로 결정(변경)된 '군포지구 지구단위계획'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(031-390-038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6. 6. 26.
군 포 시 장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- ①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변경 : 변경없음
- ②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: 변경없음
-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: 변경없음
-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색채·건축선 : 변경없음
- 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구분	적용기준	
	기정	변경
구역전체	1) 도시축 경관계획 ○ 같은 블록내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할 것을 권장 ○ 가로변에는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 ○ 대로변에는 완충녹지를 두어 차폐식재	변경없음
	2) 도시 색채계획 ○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, 군포시장과 협의하여 시행	2) 도시 색채계획 ○ 「202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」 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, 군포시장과 협의하여 시행
	3) 공원, 녹지계획 ○ 공원 조경계획 : 도시공원법 등 관계규정에 의함 ○ 녹지 조경계획 : 대로변에 폭 7~10m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하고, 수목 및 잔디를 식재하여 푸른공간을 조성	변경없음
		4) 기타 ○ 「202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」 상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 도입 권장